

11

2019-11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5
•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0
•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25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30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3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41
• 여주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43
•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45
•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47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부성역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49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56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63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제대로 가고 있는가 ----- 71
- 경기도의회, 종이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17일 연구용역 착수 ----- 73
- 인천시의회, 텐진시와 우호관계 발전방안 논의 ----- 75

최근 제·개정 법령

- 공무원임용령 ----- 7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79
- 주택법 시행령 ----- 81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83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 --- 86
- 전라남도 곡성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질의 --- 89
- 전라남도 강진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질의 ----- 93

표지 설명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 ----- 98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10호, 2019. 11. 1., 일부개정]

■ 주요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 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 관리 시설 확대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홍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관리시설"이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제와 여제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 빗물유출수를 땅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투수성 포장, 침투조, 침투트렌치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 빗물의 유출제어를 목적으로 빗물을 저류 또는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9.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11.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1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1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물순환 관리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물순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물순환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통합적 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균형배분의 원칙 : 시장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5. 수요관리의 원칙 :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 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순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순환 관리계획

제6조(물순환 목표기준의 설정과 공개) ① 물순환 목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설정한다.

1.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할수록 건전한 물순환임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인 물순환 건전화율
2. 해당 물순환 건전화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의 범위와 규모로서 해당 시설로 유입되는 집수면적과 해당 시설의 빗물관리 가능량으로 나타내는 물순환 분담량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순환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물순환 건전성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
4.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5.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빗물·지표수·지하수의 물질수지
6.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7. 물순환 체계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 계획
8. 개발사업을 고려한 물순환 관리시설 목표량의 시행주체별 분담비율
9. 도시 물환경 악화 지역의 우선적 중점관리를 위한 개별사업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반영 지침
10. 기존 수자원의 사용 저감계획 및 물의 재이용 등 대체수원의 확보계획
11. 물순환 건전성 목표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12.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④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하수도종합계획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의 수립) ①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은 물순환 관리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물순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저영향개발 계획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개발 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물순환 목표기준을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사업대상지에 할당 고시된 물순환 분담량 및 관련 도서

4.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계획(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물순환이 회복되고, 우수 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관리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3. 제25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물순환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3장 물순환위원회

제12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물순환 관리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인증 및 인증기관 선정에 대한 사항
5. 물순환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물순환 관리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물순환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8. 물순환 회복 등을 위한 시민실천 모델 개발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및 물순환 관리 업무 소관 국장과 각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 및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전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전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3. 생태하천회복 분과위원회
4. 저영향개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제22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에 인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의 객관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고 시 허위신고의 경우 또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자격미달의 경우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고, 경감 받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 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서 말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③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 대상 사업

제25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권자는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 시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 받은 물순환 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권자는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물순환 회복 촉진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 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 요금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전액 면제한다.

제29조(풍수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0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1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 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2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영산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3조(강우유출수 부담금) ① 시장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불투수면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발생 불투수면적에 비례하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강우유출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강우유출수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분담량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우유출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기타 강우유출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원

제34조(물순환 관리시설의 확대 보급)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순환 관리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물순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물 재이용시설의 연계 등)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또는 다른 물 재이용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건축 등의 시설을 계획하려는 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시설을 계획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물순환 관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제22조제2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물순환 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정하는 물순환 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 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38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각화·정보화·공간화를 위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등 물순환 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 관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확대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19. 10.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342호, 2019. 10. 20., 일부개정]

■ 주요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단, 달성군은 관내에서 제외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대절차) ① 시장은 사용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⑤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임대료를 농기계의 출고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대구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일 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사용자가 농기계를 반환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차한 경우
5. 시장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제12조(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 및 제13조에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대사업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시행 2020. 5. 8.] [울산광역시조례 제2041호, 2019. 11. 7., 제정]

■ 주요목적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 주요내용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심야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7.] [인천광역시조례 제6267호, 2019. 11. 7., 제정]

주요목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시행 2019. 9. 23.] [충청북도조례 제4310호, 2019. 9. 23., 제정]

■ 주요목적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북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충청북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

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등)의 여가 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

3.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도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 2019. 11. 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476호, 2019. 11. 5., 제정]

주요목적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공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놀 권리) 아동에게는 안전한 놀이공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하여 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공간 설계 시 아동의 창의성, 모험성, 도전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배치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1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놀이공간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공간 조성·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334호, 2019. 11. 6., 제정]

주요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불 권리 신장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대문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456호, 2019. 11. 8., 제정]

■ 주요목적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시장은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1.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975호, 2019. 11. 8., 제정]

■ 주요목적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택시어울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로 한다.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 및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5.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8.]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740호, 2019. 11. 8., 제정]

■ 주요목적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부성역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0. 16.(수), 13:30~15:30 / 한국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소강당〉



I 총 평

(오인철 의원)

- 이번 토론회는 관계공무원과 관련전문가,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부성역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천안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써 천안의 성장과 부성지구 개발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선행 과제이자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 이에 천안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천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의견이 모아짐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천안시를 비롯, 충남도의회와 국회(박완주 의원) 차원 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담은 정책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관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천안시 및 충청남도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학과 산학협력단장>

- 천안에는 수도권 전철역 6개가 있지만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역 추가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성동에서도 역 신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가)부성역 신설 예상 위치는 두정역과 2.8km, 직산역과는 2km이며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역간 거리 근거 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음. 예상되는 예산은 약 3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함
- 도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이며, 전철역사 신설로 동남구와 서북구의 지역균형을 아우르면서 교통량을 고르게 분산해 막힘없는 도시 대동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천안에는 성환과 직산, 두정, 천안, 봉명, 쌍용역 등 6곳의 수도권 전철역이 있고 성환~직산 구간은 5.4km, 직산~두정은 4.3km, 두정~천안은 2.6km, 천안~봉명은 1.5km, 봉명~쌍용은 1.6km의 거리 간격을 두고 있음
- 이에 신설역의 1일 수요, 건설비용 및 편익, 경제적, 재무적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1호선 사업 등을 반영한 최적의 신설 역사 계획과 위치를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조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은 기재부 예타를 시행할 경우 기재부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예비타당성 기본 요건인 300억원 이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가역 설치 비용을 300억원 이하로 하는 간이역 형태의 설치도 고려해볼만 함

② 지정토론(5인)

①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경부선에 전철역으로서 부성역 추가 설치를 위해 부성지구개발 사업과 공주대학교 학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원 등과 같은 기본적 요건이 갖추어 있다고 봄
- 수요창출 측면에서는 공주대학교 학생들의 통학패턴을 조사하여 추가역 설치로 철도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부성지구개발의 경우 개발시기 및 규모를 시나리오로 처리하여 조기개발 및 규모를 최대한 시행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최소대안과 최대 개발대안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여 수요를 고려함으로써 지자체의 추가역 설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한 개발내용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실행한다는 전제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수요에 대하여 적정과 최대 수준으로 2개 정도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로 수요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하도록 타당성조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② 김영춘 (공주대학교 부총장)

- 사신설이 필요한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의 경우 천안시 인구 100만에 대비한 신교통체계 중장기계획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 기존의 천안시 관내의 6개 수도권 전철역(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과 더불어 추가설치가 필요한 역(부성역, 청수역) 중 하나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 신 부성역 설계방안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만5천여명에 이르는 두정역 이용자 분산과 천안서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직산역과 두정역(역간 거리 4.2km) 사이에 부성역(두정역에서 1.8km, 부성지구 택지개발 구역내)을 신설하되, 신설되는 역사의 출입구를 선로의 동편과 서편에서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이용자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도천안시의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 구성용역 수행기관 역시 도심을 종단하는 전철로 인해서 동서축 방향으로 도로 교통시설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어 반드시 동서를 연결하는 출입구 및 연결도로의 건설이 필요함
- 향후 두정역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입주할 예정으로 두정역 인근의 교통체증을 줄이며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두정역 이용자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부성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

③ 유제상 (부성1동 통장협의회 회장)

- 현재 부성지구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부분 주거지역 이면서 특히 부대초등학교 및 부성중학교가 있어 학교정화구역으로 상업시설 개발이 제한적임
- 1호선 전철역(경부선 포함) 동서간의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양쪽지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부성역 서쪽지역에 개발 중인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접근이 용이 하도록 계획하여 부성지구 주민들의 거주환경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부성역은 인근 부성지구 택지개발지역 및 업성저수지 수변생태 공원 조성지역과 성성도시개발구역을 연계하여 1호선(경부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 (부성지구택지개발구역)과 서부지역(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사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④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과장)

- 경부선은 지역간 철도이면서 수도권전철로 이용되므로 영향권이 서울, 경기도, 인천이 포함되어야 하며 천안시를 중심으로 보면 남측으로 충청남도 지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영향권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두정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천안관령,; 대학(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서대 천안캠퍼스)들로 통학하는 학생들 및 천안 제2, 3, 4산업단지, 삼성 SDI 등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천안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신설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임
- 경부선 축의 하나인 부성역 추가설치는 기본적 요건은 갖추어졌으나,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감안해 300억 이하의 역사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원종민 (천안시 교통정책과 과장)

- 현재 천안지역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43.5%에 불과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으로 이를 올릴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부성역을 비롯한 4개역을 신설하고 이들 역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노선을 고려한 신교통체계 구축을 준비 중으로 부성역 신설은 그 신호탄이 될 것임
- 부성역은 2020년 3월까지 역신설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

3 종합토론

-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은 설계 및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곧 착공 예정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향후 부성역 신설에 역량을 집중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부성역이 신설되면 천안 서북구 주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가)부성역 신설은 단순히 역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천안 서북구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임. 부성역 신설의 적정한 위치, 정거장 시설규모와 승강장 배치에 대한 검토, 사업비 산정 및 적정성,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 박완주]

- 6개에 불과한 1호선 전철역은 수도권에 비해 정차역 사이의 구간거리가 길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번 토론회가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반영하고, 전철역 신설을 통해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교통이용이 이루어 질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함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 부성역 신설사업은 수도권 전철 천안 구간을 통근하는 직장인과 인근 대학교 학생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천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및 천안시, 천안시의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가)부성역 신설의 당위성과 실효적인 건설전략 마련을 위한 관심 유도
2. 비용절감을 위한 300억원 미만의 예산 투입 방안
3. 현재 두정역 이용자 쏠림현상 분산을 위한 부성역 신설 당위성 부각
4. 천안시 신교통 도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및 충남 교통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결 과>

- 부성역 신설 정책토론회 통해 역사 신설의 당위성 제시 됨
- 부성역을 비롯한 4개역을 신설하고 이들 역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노선을 고려한 신교통체계 구축 준비
- 부성역의 경우 2020년 3월까지 역신설 타당성 용역을 완료, 국토부와 역신설 협의 계획
- 천안시의 경우 수도권전철 역사 수를 기존 6개에서 4개를 추가하는가
동시 연계교통수단 마련, 도시철도망의 간지선 체계 확보할 계획임
부성역 신설은 부성지구개발 사업과 공주대학교 등 대학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 요건 갖추.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0. 18.(금), 15:00~17:30 / 충청남도의회 의회동 소회의실〉



I 총 평

(여운영 의원)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접근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들은 공교육기관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과 최소한의 교육 받을 권리 차원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토론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
 - 토론자로 참여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의 접근을 청소년복지와 인간의 기본권,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활성화 방안 제안



-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졸업생은 본인의 사례를 통해 중졸임에도 지역 청년조합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장점과 문제점 도출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교육지원’은 학교를 복귀를 전제로 지원할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처한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함.
- 서울시는 2001년부터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로부터 탈학교 청소년 지원 정책 실시
-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타 시·도도 조금씩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른 시·도도 계속적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방안 7가지 제시
 - 1) 교육은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 교육부의 학교 밖 지원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복귀에 중점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현재 청소년의 처한 상황에서 지원이 맞다고 봄.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하고, 직업을 갖고,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핵심
 -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충남에서 금산군이 군 조례를 통해 급식비를 올해부터 지원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지원 필요

- 4) 교육청사무가 아닌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무로 봐야 함.
- 5)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 절실
- 6)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필요
- 7) 대안교육기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굳이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각 시·도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② 지정토론(4인)

① 허창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현재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 교육 혁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변화의 시작은 보편적으로 대안 교육 운동으로 불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보고 있으며,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확산되었음.
 - 교육은 현재 패러다임 이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유학기제, 혁신학교와 같이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교육의 경계로 편협한 교육개념을 탈피하고 학령기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으로 교육의 개념을 접근해야 함.
 - 삶의 질을 요구하는 행복추구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의 권리
 - 교육도 행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적 영역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임

② 박현수(별무리학교 학교장)

-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음. 본인의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학교 폭력과 자살이 늘어나는 학생들..학교교육은 이미 붕괴 되고 있다고 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해결을 위한 계기가 대안학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



-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 있음.
- 부모들이 왜 돈을 지급하면서도 대안학교를 보내는지 고민할 필요 있음.
 -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안교육기관이 하고 있음.

③ 김민수(꽃피는학교<(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대표이사)

- 교육의 의미를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봐야함.
- ‘공교육을 하는 학교만이 교육의 표준인가?’ 제도와 권한만을 앞세우고 있는 동안 소외된 영역의 보편교육과 가치실현은 대안교육기관이 하고 있었던 것
- 규정정보완을 통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학습자 및 보호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필요
-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보편교육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의 선택에 대해 재정적 지원책 마련 촉구
-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역차원의 지원과 협력 필요
-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의 교육 확대 필요
 -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교사들의 교류로 각자 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 상호 올림의 기회 제공
- 교육은 공동의 몫
 - 더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지역과 현장의 토대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먼저 나서야 함.

④ 조혁민(금산간디학교 졸업생)

- 대안학교를 통한 공동체, 책임감, 다양한 교육 공유
- 중졸임에도 지역의 청년조합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어필
- 대안학교를 나오다보니 나라가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청년지원사업 등에 참여 불가능에 대한 아쉬움 호소

3 종합토론

- 충남에 있는 대안학교가 현재 40개임
- 비율로 봤을 때 충남이 가장 높고 신생 탄생비율도 높음
- 충남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음

[질의: 청중 1]

- 이곳에 오면서 ‘과연 조례가 가능할까’ 의문이 있었음
- 충남이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외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충남의 대안학교로 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
- 강제교육인가? 헌법 제31조에서 보호자에 대한 의무조항인가?

[질의: 청중 2(서산꿈의학교 교사)]

- 국민의 4대 의무중 교육의 의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
- 그러나 헌법(제31조2항)에서의 교육은 의무가 아닌 보호자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꼭 학교 형태는 아님
-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은 초등교육법 임

[답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애초에는 의무로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시작
- 최근의 의무교육이 갖는 의미는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써 이것은 부모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



- 그렇다면 당사자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해야 함

[답변 : 김민수 꽃파는학교 대표이사]

- 조례 제정을 위해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함
- 법률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질의: 청중 3(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 현재 두 가지 조례 제·개정 추진중에 있음.
- 이미 충남에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시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조례로 빼서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 이 두 개의 조례는 동시에 가야함. 어느 하나만 갈수 없다고 생각함.
- 현재 반대 의견이 있기도 함.
- 또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갖고 있음.
- 그렇기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라고 격려 많이 해주면 가능하다고 봄.
- 격려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도 힘내서 하겠음.
- 의회에서라도 적극적 노력하겠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함.
- 서울시만 대안교육기관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그만큼 서울시 집행부가 앞장섰기에 가능.
- 조례는 법적 위임사항이 없더라도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능함.
-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더 만들자.
- 학부모님들은 조례 만드는 것은 의회에 맡기고 집행부 직원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길 당부.

[답변 : 여운영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공교육을 떠나는 청소년을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
2. 교육은 당사자 관점에서 인권과 청소년 복지로 접근해야함.
3. 따라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4.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

<결 과>

- 두 가지 조례가 제·개정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 노력하겠음.
-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집행부에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교육법무담당관)
 - 충청남도의회(입법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19. 10. 31.(목), 14:00~16:00 / 충남도청 대회의실〉



I 총 평

(안장현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안과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함.
 - 앞으로, 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위원회 보다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정책 자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개념정의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충청남도에 설치·운영 중인 141개의 위원회 중 우선 직접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한 위원회를 22개를 선정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에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 기존 위원회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부주도형 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고 단순히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할 뿐이므로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하여 도민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협치기반형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제안이 도민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관협치가 강화되고, △정부-도민의 소통이 강화되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고, △현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학습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지정토론(5인)

① 김용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27%), 형식적 운영(25%),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18%), 도민의 참여 미약(18%), 여러 위원회의 난립(6%), 회의 내용 비공개(2%), 회의록 부실작성(2%), 위원의 과도한 겸직 및 연임(2%)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도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으로 위원회 운영과 도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항목에는 3번의 회의 중 2번이 서면심의이거나 거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위원들의 의무참여 경향이 많고, 위원회가 의결권 없이 단순심의 등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여 위원회 간 중복업무가 많아 통합되어야 할 위원회가 존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연2회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간 소통이 필요하며,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나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② 박기남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을 관련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방식 등의 모색을 통한 실질적인 기능으로 개선 필요
- 정책결정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낮고, 실천 위주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행정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기본정책 혹은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위원회가 참여하지만,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님.

- 청년세대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다각화 및 창의적인 홍보 문구를 통한 관심유도, △기초단위 위원회부터 경험할수 있는 참여기회 부여,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④ 최재권(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이사장)

-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태도이며, 민간을 수평적 정부운영 파트너로 대할 때 분권이 가능하고 분권은 참여와 자치를 가능하게 함.
- 천안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 실무위원회는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며 결과적으로는 관행을 협치로 변화시키는 사례를 만들어 냈음.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면 정부는 민간을, 민간은 정부를 파트너로 보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함.

⑤ 구 상(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회의 결과를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현황, 운영회의 등 체계적 관리,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필요 있음.
- 위원회 신설 시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 등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설치 전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할 필요 있음.
- 한정된 인력풀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특정인이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인이 장기 연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행정편의로 위촉(연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신설·재구성 시 규정을 준수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정보 및 활동에 대한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회의 개최통지 및 충분한 회의자료를 제공하여 위원회 회의의 질을 제고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활동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3] 종합토론

-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소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던 젊은 인재들이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음.

[제안 : 덕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개발분과장 신현옥]

- ⇒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리된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통지해줘야 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여 회의체계를 정착하도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구 상]

- 교육·복지·여성·아동·육아 등의 카테고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복지에 둘 것인가 여성에 둘 것인가 교육에 둘 것인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부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분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 할 것임.

[질의 : 정책자문회의 전승에]

- ⇒ 도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데 도청·시청에는 아직 부서별 칸막이와 벽이 존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책제안을 받고자 하지만 형식적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민간협치위원회로 변모한 모습을 임기내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음

[답변 : 충청도의회 안장현 의원]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군 기초단위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우리도와 시·군단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 충청도의회 안장현 의원]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권자에게 행정의 벽은 높을 수밖에 없음. 위원회가 너무 많고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융·복합할 필요가 있어보임.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위원회부터 개혁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런 효과가 다른 위원회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정리발언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개념정의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우선 직접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한 위원회를 선정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에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민관협치기반 위원회에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결 과>

-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운동을 도모해야 함
 - 정부주도형 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하여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고,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여 위원회 간 중복 업무가 많은 경우 위원회 통합
-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위원회 현황, 운영회의 등 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위원회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중복 위촉이나 연임 지양
 - 신설·재구성시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운영평가·개선체계 구축
 - 청년세대의 위원회 참여 적극 유도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의회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 진행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서는 세 명의 전문가는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향후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세 분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첫 번째로 배인명(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두 번째로 유태현(남서울대) 교수가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에 대하여 발제한 후 마지막으로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서울시 자치구청장, 언론인, 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현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추어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道의회, 종이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 ... 17일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목표로 의정자료 전자유통 등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전 정보화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주재로 제1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포털 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포털 시스템이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이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각 부서의 의정자료를 중복·분산 관리하고, 부서별 업무 데이터를 수기로 처리하면서 이력관리,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관리 및 추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시 각종 의정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 공유·활용 및 관리가 가능해지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간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사정보 접근성이 강화돼

이번 연구용역은 의정포털 시스템의 수립계획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의정활동 정보활용 체계 강화 ▲의정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홍보활동 등이다.

원미정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의회독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독자적인 의정 포털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이번 연구용역이 실시돼 의미가 깊다”면서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지원, 홍보활동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원미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강식(더민주, 수원10)·김장일(더민주, 비례)·박세원(더민주, 화성4)·오명근(더민주, 평택4) 등 정보화위원회 소속 의원과 신남현 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담당관 등 7개 담당관, 연구용역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텐진시와 우호관계 발전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중국 텐진시 대표단(단춘화(段春华) 주임 등 6명)과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텐진시는 1993년 12월 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인천광역시의회와는 2004년 4월 13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용범 의장은 “우리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 항공 복합물류산업의 거점도시”이며 “인천시와 텐진시는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도시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텐진시 대표단 단춘화 주임은 “양 도시 모두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어 도시계획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며, “오늘의 만남을 통하여 양 도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텐진시(天津市)는 중국 4대 직할시로 인구 약1,550만명, 면적 11,946km²의 항구도시이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의회

입법에산정책담당관실



1. 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요건 강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 및 부칙 제1조 단서)

- 1) 현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부처로 전보 시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2)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함.

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제32조제1항제2호)

- 1)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2)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함.

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승진임용 제도 보완

1) 특별승진임용 대상 추가(제35조의2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5항 신설)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히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2)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및 근속승진 비율 확대(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라. 인사교류 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 복귀 보장(제4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부처 간 협업과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그 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1호, 2019.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매입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38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 빈집의 매입 가격 및 매입 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裸地)를 포함할 수 있게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완화된 면적 요건을 적용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 포함(제3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또는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인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 요건의 완화 등(제3조제2항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을 종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로 각각 완화함.

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제5조제4항 신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을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일 것 등으로 정함.

라. 빈집의 매입 가격 및 매입 요청 절차(제10조의2 신설)

- 1) 빈집의 매입 가격을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함.
- 2) 빈집 소유자는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 매입청구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정보(제15조의2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정보를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로 정함.

바. 특례를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및 인수가격의 산정방법(제41조)

-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순으로 정함.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자 지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 3)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준용하게 함.

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일부개정]

■ 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으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 완화(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를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기사 뿐만 아니라 건축시공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공 요건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나.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요건 명확화(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의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범위를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규정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유지 의무 명확화(제20조제5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강화(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신설)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 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함.

마.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요건(제58조 신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6명의 위원에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기 또는 기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분양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함.
- 2)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는 4명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함.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제정이유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항의 조정(안 제3조, 별표 1)

종전에는 철도시설의 증가, 유지관리 항목·주기 변경 등의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철도시설 중 교량·전차선로 등의 증가,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등에 한정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나. 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통보일 변경(안 제6조)

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다.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85조의5, 제85조의6 신설)

- 1)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갖춘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춘 것으로 정함.
- 2)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에 관한 서류, 보안검색장비의 구조·외관도 및 사용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함.

-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에 성능평가 시험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결과가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절차 마련(안 제85조의7 신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85조의8 및 별표 19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국제표준화기구 등이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 관리규정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안 제92조의6 및 별표 27 신설)

철도운행자등이 도급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나 작업 등을 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등을 정함.

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안 제92조의7 신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의 유지를 위해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직무전문교육,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대한 주기, 교육 내용 등을 정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의견 19-0294, 2019. 10. 8., 경상남도 진주시]

【질의요지】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장은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고 함) 제3조에서는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장이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조례”라고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이를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보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7. 25. 의견제시 17-0197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무의 위탁 운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복지시설조례에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같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및 감사의 정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관 기재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를 통해 상임이사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의견 19-0315, 2019. 10. 29., 전라남도 곡성군]

【질의요지】

곡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려고 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하여,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귀 군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곡성군조례안”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하 “미래교육재단”이라 함)은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예산의 “성립”이란 편성된 예산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의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을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 시정명령권 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적용되는 사후적 권한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예산으로 성립

하기 전의 편성된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서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안)에 의견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거나(같은 지침 I),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지침 IV), 역시 성립되기 전의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출자출연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각 규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의 작성 및 예산안의 편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곡성군조례안 제3조에서는 미래교육재단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래교육재단에 관한 조례의 입안에 있어서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하여도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의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이 곡성군조례에서 미래교육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상위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과 그 하위법령 및 「민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2018. 6. 7. 의견제시 18-0102,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217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 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의견 19-0335, 2019. 10. 22., 전라남도 강진군]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 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강진군 규칙 또는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강진군조례”라 함)에서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제4조) 및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심의사항(제5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6조의2는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 10. 2.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1. 27. 의견제시 12-0016 참조).

그러므로, 강진군이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9. 5. 9. 의견제시 19-0107, 법제처 2019. 5. 16. 의견제시 19-0154 참조).

또한, 이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바, 강진군은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4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강진군조례를 개정하여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2. 29. 의견제시 12-0056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15. 의견제시 13-0413 참조).

그런데, 강진군조례에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강진군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강진군조례에 규정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을 위임 근거 없이 강진군 규칙이나 강진군 수가 발령하는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진군 규칙이나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행정규칙인 예규로 정하려는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강진군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외의 사항이 아니라,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편의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강진군의 규칙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강진군조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강진군의 관련 규칙 및 행정규칙 입안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

충남도는 3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서명운동 시작 7개월여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충남 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경과보고와 도민 희망 메시지 영상 상영, 서명부 전달식, 서명지 제작, 결의구호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서명운동 결과 총 서명인은 지난 23일 기준 101만 961명으로 집계됐으며 A4용지 7만 5000여장 분량이다. 향후 서명인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는 서명부 원본을 도청에 보관한 뒤 복사본을 만들어 내달 중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9년 1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